

안산시 농지개량사업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폐지 안

의안	802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9. 8.

제출자 : 안산시장

폐지이유

- 안산시 농지개량사업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는 1986. 1. 1일자로 제정되어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
- 근거규정이 '95. 5. 22 삭제됨으로써 자치법규정비차원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“동 조례 폐지”

폐지조례(안) : 별첨

기타 참고 자료

-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7조 : 별첨
- 기존의 조례 : 별첨

안산시 농지개량사업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

안산시 농지개량사업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안산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

(안산시조례 제81호)
1986. 1. 1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 사업 시행의 원활과 공사 및 시설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농지개량사업이라 함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부담금의 부과) 농지개량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역안의 토지 또는 가옥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이익을 받은 한도안에서 금전 또는 부역현물을 부과할 수 있다.

제4조(부과기준) 농지에 대하여는 수익을 받은 정도에 따라 등급별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시설 공작물에 대하여는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액을 정산할 수 없는 것은 수량과 이용가치를 기준으로 한다.

제5조(부과액의 결정) ①부과대상을 조사하여 농지와 시설을 등급별 부과지 수를 산정하여 부과액을 정한다.

②부과총액은 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유지관리비와 보상비 등 소요총액의 일부로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결정한다.

제6조(부담금의 납입) 부담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제7조(부담금의 징수)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

제8조(부담금의 승계)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담금은 부과대상물의 권리이전에 따라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.

제9조(벌칙)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의 징수를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탈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료금에 처한다.

제10조(위임규정) 이 조례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.

제3편 경제통상 제4장 농어촌진흥 안산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

부 칙

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